

많이 하는 질문 Q&A

Q. 공공후견인을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나요?

A. 예, 후견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.
(은행업무, 병원진료 동행 등 평일에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.)

Q. 후견인 활동이 일하는 건가요?

A. 공공후견인은 직업이 아닙니다.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아닙니다.

Q. 언제든 할 수 있는건가요?

A. 먼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로 선발된 후, 치매어르신과 연결이 된 후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치매로부터
건강한 삶,
경기도가
함께 합니다.



지원내용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

I 지원대상

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
- ②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- ③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
* 단,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

I 지원내용

후견심판청구절차 및 비용 지원

I 활동비

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: 피후견인 1인 월 20만 원
(최대 피후견인 3인일 경우 40만 원)

치매공공후견 상담 및 문의
1899-9988 치매상담콜센터로!

치매 공공후견 사업안내

후견인으로 여는 인생 2막,
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



경기도 치매공공후견사업 문의
경기도광역치매센터 T. 031-271-7036

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?

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,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입니다.

*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(3년)



이용 사례

사례.1

혼자 지내던 86세의 치매 어르신은 자녀가 1명 있지만 단절된 관계였고,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.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은행업무, 물건 구입 등 여러 사무 수행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.

그런 어르신에게 찾아온 후견인은 어르신의 기초연금, 수급비 등을 관리해주고 공과금, 세금납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. 또 주거급여의 재신청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어르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. 후견인은 소외계층인 치매 어르신을 도우며 인생 2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사례.2

오래된 쪽방에서 지내시던 76세의 치매 어르신은 가족이 없었고, 배타적인 성향으로 복지서비스 등 지원사항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.

후견인은 어르신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통장관리,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,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연결해 주었습니다. 또 병원 진료를 거부하던 어르신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등 건강관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.

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은 치매공공후견 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
*중앙치매센터, 「치매공공후견 사례집」 발취

공공후견인은 누군가요?

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

1 지원자격

-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- 「민법」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은 자,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- 치매공공후견인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선발 전형과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.
-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양성교육 이수 후 위촉을 통해 후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어떤 절차를 거칠까?



1 공공후견서비스 신청

주민센터,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.



2 후견대상자 선정

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.



3 후견심판청구 준비

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.



4 후견심판청구

경기도광역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의 (가정)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.



5 후견심판 결정

(가정)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.



6 후견활동 시작

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,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.

